(별지 제10호 서식)

담당부서	○○세관○○과
담당과장	○○○
담 당 자	○○○
연 락 처(전화)	○○○-○○○○

납 부 고 지 (통 보) 서

1. 귀하가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하오니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가. 납부서번호 :

나. 세액합계 : 납기내 금액 원정

납기후 금액 원정

다. 납부기한 : 20 . . 까지

라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

마. 회계연도 : 20 년도

바. 회계구분 : 관세청소관 일반회계

사. 납세의무자 : 주소

상호

성명

아. 수입신고번호 : 외 건

2. 만일 납부기한 경과시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금액(납기후 금액)을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의 0.022%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(최대 5년) 납부하여야 합니다.
3.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목별 세액 및 산출근거는 납부 목록(별지 제16호 서식)과 수입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납부 목록 1부

○ ○ 세관 수입징수관 직인